

납부유예(6차) 신청 안내 홍보문

▶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(6차) 신청 안내 ◀

- ◆ (신청대상)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(사회적 배려대상자)
- ◆ (지원내용) 3개월분('21.10~12월 청구서)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
 - *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
 - * 납부기한 도래시 '22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(콜센터로 문의)
- ◆ (신청기간) '21.10.12(화)~12.31(금)
 - *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
(예 : 10월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10.30일인 경우, 10.30일 전까지 신청시 10월 요금부터 납부유예 적용 가능)
- ◆ (신청방법) 관할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

회 사 명	공 급 지 역	홈페이지 주소	대표전화 (콜센터)
(주)해양에너지	나주시, 화순·장성·담양·영광·해남·함평·장흥군	www.hyenergy.co.kr	1544-1115
목포도시가스(주)	목포시, 무안·영암·강진군	www.mokpocitygas.co.kr	1899-6390
전남도도시가스(주)	순천·광양시, 곡성·구례·고흥·보성군	www.skens.com/chonnam /index.jsp	1599-0887
대화도시가스(주)	여수시	www.dhgas.com	1661-6080

- ◆ (구비서류)
 1.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(사회적 배려대상자) :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
 2. 소상공인 :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
 -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*로 판단하는 경우 **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**(신청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)

* ①소상공인 호용도(일반용1<영업용1>: 음식점 등에서 온수·취사용으로 사용 / 업무난방용·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)가 아니거나, ②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